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49회 제1차 정례회 (2021. 6. 1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1-54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5월 21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1년 5월 24일(월)

2. 제안사유

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 규정의 일부를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 확대(안 제15조)
- 나.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일부 문구 정정(안 제17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3조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83조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안은 근거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그에 맞게 고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외에 ‘주택’을 건축 중인

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취득세는 ‘건축물’뿐만 아니라 ‘주택’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, 재산세 감면대상에 ‘주택’을 건축 중인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고자 안 제15조에 ‘주택’ 중인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. 이러한 개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그리고 안 제17조제2항을 보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’ 하도록 되어있음에 반해 동 조례에는 ‘감면 여부를 조사·결정’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감면 결정이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의한 ‘처분’ 으로 보일 염려가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임.

붙임: 관계법령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제123조(직접 사용의 범위)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 <개정 2020. 12. 31.>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183조(감면신청 등)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(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